



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최근 제동장치(브레이크)가 제거된 자전거(픽시 자전거)를 이용한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남구 및 남부경찰서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(픽시 자전거) 관련 **홍보 및 불법 운행 단속 강화**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따라서 픽시 자전거의 불법성 및 위험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자녀의 자전거 제동장치 부착 확인 및 교통 안전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< 자전거등(자전거+개인형 이동장치)의 도로주행 관련(도로교통법 제13조의2) >

-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
※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(과속 금지 등)
-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
-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

< 픽시자전거 관련 >

- 「자전거법」 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,
⇒ 브레이크(제동장치)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 도로 통행 불가능
⇒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, 자전거 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
⇒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(앞바퀴·뒷바퀴)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
※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(KC인증)을 득할 수 없으며,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·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*가 부과될 수 있음
(「전기생활용품안전법」, 과태료1천만원 이하)
- 픽시자전거 이용가능 구역: 묘기장, 개인장소 등 별도로 구별된 공간

<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>

- ①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
- ④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⑤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

※ 참고 법령: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(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), 제156조(벌칙)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